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21.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7. 14 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근 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됨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 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조, 제43조)
-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신설에 따라 학생회관을 학생교육 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원장 및 관장으로 변경함.
-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를 변경함.(안 별표 1)
 - (1) A3-B4의 사용료 란을 삭제
 - (2) A4-B5의 사용료를 1매당 180원에서 1매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동 개정 조례안은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기구 신설을 담은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2008년 6월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¹⁾**(충북도학생교육문화원)

○ 다만, 동 개정 조례안의 「별표1」에서 규정한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인쇄료 구분란의 갈라인쇄(규격 A4-B5) 사용료를 1매당 현행 180원에서 500원으로 규정하여 360%의 인상률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인상 사유와, 그간 사용료 징수금액 및 활용도, 타 시도와의 징수금액 비교 등 설명이 필요함.

<별표 1>

구 분		징수액		비고
칼라	A4-B5	현행	1매당 180원	현행대비 360% 인상
		개정	1매당 500원	

1)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6.13>

- 그리고,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별표2」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를 비롯한 부속설비 사용의 징수금액에 따른 산출기초 및 타시도 징수 사례 등의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산정의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 **타시도 사용료 징수 현황**(별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²⁾」이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실업계고교가 전문계고교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³⁾에 따라 다수의 조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무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 부서에서 일괄 정비로 인한 법규사무의 혼돈과 행정의 소모를 예방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규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별 조례의 개정시마다 개정함으로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청 자치법규 : 조례 45건, 규칙 59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0003호, 2007.4.1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동 조례안 『별표2』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 징수액과 관련하여 충청 예술의전당과 비교할 때 객석 등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액이 동일하게 책정됨으로서 사용금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조례안 『별표 2』 사용료 징수금액 중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를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안자 : 최광옥의원 외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6조 사용료 중 안 별표2의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 징수금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1. 안 『별표2』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징수액을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함.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의 『별표 2』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기 관 명	사 용 구 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20,000원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 제26조(사용료) 관련

《개정안》

【별표 2】

기 관 명	사 용 구 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30,000원	
		오후	160,000원	
		야간	200,000원	



《수정안》

【별표 2】

기 관 명	사 용 구 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20,000원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으로,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제33조의2 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대출기간의 연장은 관장이 정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15조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25조·제35조·제45조 중 "하드로써"를 각각 "함으로써"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9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9조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한다.

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7조 중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학생회관의 사용)"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24조의 제목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을 각각 "원장 및 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호인"을 "돌봄이"로 한다.

①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단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한다.

제34조·제40조제1항·제44조 중 "다음 각 호"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제43조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인쇄료의 구분란 중 칼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 수 액	비 고
칼 라	A4-B5	500원	1매당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생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으로, "귀 관의 규정"을 "귀 원(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20,000원	○ 전시실 사용기간 4월~10월(09:00 ~ 20:00) 11월 ~3월(09:00 ~ 18:00) ○ 기준시간(4시간) 초과 사용 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 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영화음악감상실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본관 공연장		50,000원			
	강 당		75,000원			
	전시실(내부)		20,000원			
	전시실(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학생문화원 공연장)		40,000원		
		피아노(영화음악감상실)		10,000원		
		피아노(본관 공연장)		10,000원		
		프로젝터(1회)		20,000원		
		CD녹음(1회)		30,000원		
		테이프녹음(1회)		1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보면대(1개당)		1,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방(학생문화원)		실사용량				
냉방(본관)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기관명	사 용 구 분		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수영장 (경영풀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 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단체입장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풀장(시간당)		200,000원	○ 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제 천 학생회관	롤 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자탈지료실)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현행	개정안
<p>일. 다만, <u>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제3호 제호 및 제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u> 개관한다.</p>	<p>-----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 ----- -----.</p>
<p>②(생략) 제14조(관외대출 제한) ①<u>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단서신설></u></p>	<p>②(현행과 같음) 제14조(관외대출 제한) ①----- ----- --<u>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대출할 수 있다.</u></p>
<p>1.~5.(생략) ②(생략) ③<u>도서의 관외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1.~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u>대출기간의 연장은 관장이 정한다.</u></p>
<p>제15조(도서관 사용제한) <u>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15조(도서관 사용제한) ①-----<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4.(생략) 5. <u>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u></p>	<p>1.~4.(현행과 같음) <삭제></p>
<p>6. <u>기타 실내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u> <신설></p>	<p><삭제></p>
<p>제16조(사용자의 책임) <u>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p>②<u>도서관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u> 제16조(사용자의 책임) ----- ----- -----<u>함으로써</u>----- ----- -----.</p>
<p>제5장 <u>학생회관</u></p>	<p>제5장 <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사용대상) <u>학생회관</u>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과 충청북도 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u>학생회관</u>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9조(사용대상) <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 ----- ----- <u>원장 및 관장</u> ----- ----- ----- <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p>
<p>제20조(사용기간) ①사용자는 <u>관장</u>이 정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u>관장</u>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20조(사용기간) ①-- <u>원장 및 관장</u> ----- ----- ----- <u>원장 및 관장</u> ----- -----</p>
<p>제21조(<u>학생회관의 사용</u>) ①<u>학생회관</u>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u>관장</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 한다. ②<u>학생회관</u>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관장</u>이 정한다. 1.~4.(생략) <신설></p>	<p>②(현행과 같음) 제21조(<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u>) ①<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 ----- ----- <u>원장 및 관장</u> ----- ----- ----- ----- ----- ----- ----- ----- ----- ②<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 -----<u>원장 및 관장</u>-----. 1.~4.(현행과 같음)</p>
<p>제2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u>학생회관</u>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u>학생회관</u> 사정을 고려하여 <u>관장</u>이 정한다.</p>	<p>5. <u>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u> 제2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u>원장 및 관장</u>.</p>

현행	개정안
<p>②학생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p>	<p>②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 ----- 원장 및 관장 ---.</p>
<p>제23조(휴관일) ①학생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3조(휴관일) ①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 원장 및 관장 ----- -----.</p>
<p>②학생회관 시설의 수리·정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 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p>	<p>②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 ----- ----- 원장 및 관장 --.</p>
<p>제24조(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학생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원장 및 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p>
<p>1.~5.(생략) 6. 기타 학생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1.~5.(현행과 같음) 6.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 -----</p>
<p>②관장은 학생회관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②원장 및 관장--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생회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 -----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u>함으로써</u> ----- -----.</p>
<p>제26조(사용료)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p>	<p>제26조(사용료)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원장 및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생략) 2. 학생회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p>	<p>1.(현행과 같음) 2.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p>

현 행	개 정 안
<p>는 청소년의 문예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p> <p>3.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4.(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할인하여 징수한다.</p> <p>1.~3.(생략)</p> <p>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u>개호인 1인</u></p> <p>5.(생략)</p> <p>제2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3.(생략)</p> <p>제29조(재정) <u>학생회관</u>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p> <p>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원장 및 장장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2.(생략)</p> <p>제34조(사용제한) 원장 및 장장은 <u>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u></p> <p>1.~3.(생략)</p>	<p>----- ----</p> <p>3. <u>원장 및 관장</u> ----- -----</p> <p>4.(현행과 같음)</p> <p>②<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 <u>50퍼센트</u> -----.</p> <p>1.~3.(현행과 같음)</p> <p>4. ----- -- <u>보건복지가족부장관</u> ----- -----<u>돌봄</u> <u>인</u>-----</p> <p>5.(현행과 같음)</p> <p>제28조(사용료의 반환)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u> -----.</p> <p>1.~3.(현행과 같음)</p> <p>제29조(재정) <u>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u> ----- -----.</p> <p>제33조의2(사용료의 감면)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2.(현행과 같음)</p> <p>제34조(사용제한)-----<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및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35조(사용자의 책임) ----- ----- -----<u>함으로</u> -----<u>써</u>----- -----.</p>
<p>제38(시설의 사용)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4호 내지 제6호</u>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38(시설의 사용) ①----- -----<u>별지 제4호</u> <u>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u>----- -----.</p> <p>②(현행과 같음)</p>
<p>제40조(사용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p> <p>1.~3.(생략)</p>	<p>제40조(사용제한) ①---<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3.(현행과 같음)</p>
<p>제43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u>실업계고등학교</u>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3조(사용대상) -----<u>전문계고등학교</u> ----- ----- ----- ----- ----- ----- ----- ----- ----- -----.</p>
<p>제44조(사용 제한) 실습소 이용자가 실습중 <u>다음 각호</u>에 해당 할 때에는 소장은 실습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p>1.~3.(생략)</p>	<p>제44조(사용 제한)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3.(현행과 같음)</p>
<p>제4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45조(사용자의 책임) ----- ----- -----<u>함</u> <u>으로써</u>----- -----.</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3.01.01.]]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02.12.31, 2004.3.17]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교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